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4344호

시행일자 2017. 8. 8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319(2017. 7. 27.)

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, 제외 성분목록을 공고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」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→법령·자료→제·개정 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)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